

## 중요한 설명

### 난민보호부(RPD)의 난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#### 이의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

##### 난민보호부(RPD)의 결정에 대한 사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내에

- 이의신청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중요한 설명에 이의신청통지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.
- 난민이의신청부(Refugee Appeal Division, RAD) 등록처에 이의신청통지서 3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본인과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통지서에 명시되거나, 각 이의신청자의 이의신청통지서가 RAD 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
##### 난민보호부의 결정에 대한 사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 일 내에

- 이의신청자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RAD 에 이의신청자기록 2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의신청자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 및 정보는 웹사이트 <http://www.irb-cisr.gc.ca/Eng/RefApp/Pages/RefAppKitTro.aspx> 에 있는 *이의신청자 가이드(Appellant's Guide)*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주의 사항: 이의신청자기록 제출 기한 이후에 이의신청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#### 제출 기한 연장 신청:

##### 이의신청통지서 및 이의신청자기록 제출 기한 연장

이의신청통지서 및 이의신청자기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, RAD 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, 이의신청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. 기한 연장 신청은 난민이의신청부규칙 6 호 및 37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 이의신청통지서 3 부와 이의신청자기록 2 부를 첨부해야 하며, 선서진술서 또는 서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.

##### 이의신청자기록 제출 기한 연장

이의신청통지서는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이의신청자기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, RAD 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, 이의신청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. 기한 연장 신청은 난민이의신청부규칙 6 호 및 37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 이의신청자기록 2 부를 첨부해야 하며, 선서진술서 또는 서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.

##### 이의신청 서류 접수처

여러분에게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난민보호부 등록처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RAD 등록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 변호사

여러분이 원할 경우, 이의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.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수를 받을 경우, 그 변호사는 각 주의 법률협회(변호사 및 법무사), 퀘벡 주 공증인협회(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) 또는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위원회(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)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. 변호사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무보수대리인선임통지서(Notice of Representation Without a Fee or Other Consideration)’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되도록 빨리 해당 장관 및 RAD 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양식은 IRB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(아래 참조).

변호사를 선임할 경우, 변호사가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.

## 언어

이의신청통지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캐나다 공용어(영어 또는 프랑스어)로 된 것을 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언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 및 그 번역본이 정확하다는 번역사의 서명 서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.

IRB 웹사이트에 있는 *이의신청자 가이드*에는 영어/프랑스어 선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아울러, 이의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경우의 통역 요청에 관한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.

##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

*이민난민보호법(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/ Loi sur l'immigration et la protection de réfugiés)*에 의거한 권한에 따라, 이의신청 과정에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이의신청에 대한 RAD 의 결정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.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*이민난민보호법*의 시행 및 집행을 목적으로 캐나다 국경관리국(Canada Border Services Agency),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(Immigration,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), 캐나다 보안정보국(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) 및 법집행 기관 등의 기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와 *이의신청자 키트(Appellant's Kit)* 전자 양식\*에 대한 링크는  
다음에 나와 있습니다:

<http://www.irb-cisr.gc.ca/Eng/RefApp/Pages/RefAppKitTro.aspx>.

난민이의신청부 규정(RAD Rules)은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 [laws-lois.justice.gc.ca/eng/regulations/SOR-2012-257/index.html](http://laws-lois.justice.gc.ca/eng/regulations/SOR-2012-257/index.html)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**\*사용 가능한 프린터가 없는 경우, 가까운 IRB 사무소(아래 정보 참조)에 가서서  
이의신청자 키트 인쇄본을 받으십시오.**

난민이의신청부(RAD) 등록처 연락처 정보

**동부 지역(몬트리올)**

**이민난민위원회 RAD 등록처**  
Complexe Guy-Favreau  
200 René-Lévesque Boulevard  
East Tower, Room 102  
Montréal, Québec H2Z 1X4  
전화: 514-283-7733 또는 1-866-626-8719  
팩스: 514-496-6629

**중부 지역(토론토)**

**이민난민위원회 RAD 등록처**  
74 Victoria Street, Suite 400  
Toronto, Ontario M5C 3C7  
전화: 416-954-1000  
또는 1-866-790-0581  
팩스: 416-954-1511

**서부 지역(밴쿠버)**

**이민난민위원회 RAD 등록처**  
300 West Georgia Street, Suite 1600  
Vancouver, British Columbia V6B 6C8  
전화: 604-666-5946  
또는 1-866-787-7472  
팩스: 604-666-9870